

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성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5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8월 9일

발 의 자 : 이성희, 김경자(강서), 이상묵,
이혜경, 박성숙, 조상호, 장홍순,
박진형, 전철수, 오봉수, 최영수,
김제리, 진두생, 이숙자, 박중화,
박마루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현행 조례는 시장이 국제회의산업의 육성·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·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, 수립된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·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환류(feed-back) 절차를 필수화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전년도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(안 제3조제2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전년도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·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전년도 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